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(안민석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7748

발의연월일: 2021. 1. 28.

발 의 자: 안민석 · 김두관 · 김승원

김영호 · 김진애 · 맹성규

박성준 • 서동용 • 이재정

전혜숙 의원(10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부패행위 등에 관한 신고나 이에 관련한 진술 및 자료 제출 등과 관련하여 신고자의 범죄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정하고, 징계처분에 있어서도이를 준용하도록 정함.

그런데 「공익신고자 보호법」과 달리 징계처분 감면 등에 관한 규정이 다소 모호하고, 신고자에 대한 형의 감면 등을 위해서는 부패행위의 신고 및 신고자 보호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국민권익위원회가법원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어야 함에도 이에 대한 별도의 근거가 없어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.

이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신고자 관련 소송에서 법원의 요청이 있거 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신고자를 충실히 보호하고 원활한 재판 진행이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(안 제66조).

법률 제 호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

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 과 같이 개정한다.

제66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②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 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 신고자의 징계 권자나 행정처분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 수 있다. 이 경우 요구를 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.
- 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고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재판 또는 신고등으로 인한 징계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법원의 담당재판부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66조(책임의 감면 등) ① (생	제66조(책임의 감면 등) ① (현행
략)	과 같음)
② 공공기관의 징계처분에 관	② 신고등과 관련하여 발견된
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.	위법행위 등을 이유로 신고자
	에게 징계를 하거나 불리한 행
	정처분을 하는 경우 위원회는
	신고자의 징계권자나 행정처분
	권자에게 그 징계나 행정처분
	의 감경 또는 면제를 요구할
	수 있다. 이 경우 요구를 받은
	<u>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</u>
	외에는 요구에 따라야 한다.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④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신
	고자의 범죄행위에 관한 형사
	재판 또는 신고등으로 인한 징
	계나 불리한 행정처분과 관련
	된 소송에 대하여 법원의 요청
	이 있거나 필요하다고 인정할
	때에는 법원의 담당 재판부에
	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.